

## 2022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2022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 
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5월 17일

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예정 직 급	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 서	주요예정직무
노무사	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(6급상당) 주35시간	1명	2년	자치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노동조합(공무원, 무기계약직)관리 협조</li> <li>▪ 노무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</li> <li>▪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</li> <li>▪ 노무관련 자문 및 지도</li> <li>▪ 기타 사무분장에 의한 관련업무 처리</li> </ul>
법제전문관	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(7급)	1명	2년	기획감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치법규 제·개정 안건에 대한 법안 심사 및 규제심사</li> <li>▪ 조례규칙심의회 운영</li> <li>▪ 상위법 제·개정 의견 제출</li> <li>▪ 자치법규(안) 상위법 위반사항 유무 검토</li> <li>▪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(청탁금지법)</li> <li>▪ 청원 관련 업무</li> <li>▪ 기타 자치법규 및 감사법무에 관련된 업무</li> </ul>
평생교육	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(7급)	1명	2년	인재육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평생교육 정책 수립 업무</li> <li>▪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공모·개발·운영·평가</li> <li>▪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</li> <li>▪ 철원평생학습축제 및 평생교육사 실습 운영</li> <li>▪ 평생교육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·개 정 업무</li> <li>▪ 기타 평생교육 관련 특성화 사업 추진</li> </ul>

※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·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## 2. 채용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)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)
-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## 3. 응시자격 요건

-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도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- 거주지 : 제한없음

- 성 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)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

## ○ 분야별 채용자격

채용분야	채용예정 직급	채용자격 기준
노무사 (자치행정과)	시간선택제임 기제 나급 (6급상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,</li> <li>▪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/ul> <p><b>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</b>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노무법인 등에서 노사 관련 근무경력</p>
법제전문관 (기획감사실)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아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/ul> <p><b>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</b> 입법 또는 법제업무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<b>【우대사항】</b> 법학 전공자</p>
평생교육 (인재육성과)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/li> </ul> <p><b>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</b>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기업체등에서 평생교육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

※ 유의사항

1. 경력산정 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.
2.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.

## 4. 보수 수준

-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연봉액(천원)		비 고
	상 한 액	하 한 액	
시간선택제임기제‘나’급 (6급상당)	77,932천원 (68,580천원)	51,928천원 <b>(45,697천원)</b>	주35시간
7급(상당)	63,693	45,237	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복무 사항

- 복무는 임용 시 임용약정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적용 단, 근무부서의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.

## 6. 시험방법 및 합격자 기준

- 시험일정(안)

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2. 05. 27(금) ~ 05.31(화) (9:00~18:00) 3일간 ※ 공휴일 제외	2022. 06. 07.(화) (예정)	분야별 추후 별도 공지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최종 공지	

※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 “시험정보”란 공고

※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-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, 학위,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##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(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)

-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
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※ 불합격 기준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 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로 평정한 때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

## 7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2.05.27.(금) ~ 2022.05.31.(화), 근무시간 내 (09:00~18:00) \*점심시간 제외

○ 접수처 : 철원군 자치행정과(본청 2층)

※ 우)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,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(인사담당자)

○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

- ❖ 우편 접수 시 「**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 금액상당)**」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마감일 **2022. 5. 31.(화) 소인분**까지에 한해서 접수합니다. ※ 6·7급 : 7천원
- ❖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며(**☎033-450-5232**), 응시표는 면접일에 교부합니다.

## 8. 제출서류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 제출하시고,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.
- 시행처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.
-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-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〈별지 제1호서식〉

- 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서식>  
 - 응시수수료 : 철원군 1층 민원허가실 ‘철원군수입증지’ 구입(수입인지 아님)  
 ※ 6·7급 : 7천원
- 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서식>  
 ※ 이력서의 경력 및 학위사항은 경력(재직)증명서 및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를 제출한 사항만을 기재(미첨부 시 불인정)
- ④ 자기소개서 <별지 제4호서식>
- ⑤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<별지 제5호서식>
- 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서식>
-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7호서식>
- ⑧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<별지 제8호서식>
- ⑨ 채용예정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해당자, 사본제출 시 원본자참) <별지 제9호서식>  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, 응시자의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근무기간, 상근/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.  
 \*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  
 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응시자가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  
 - 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)  
 ·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(기관)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
 ·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
 (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  
 ☞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,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(재직) 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.  
 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

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⑩ 학사(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 각 1부(사본제출 시 원본지참)
  - 석(박사) 이상 졸업자의 경우, 대학교(학사) 이상 관련 자료 모두 제출
  -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
- ⑪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(해당자만 제출, 원본지참)
- ⑫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 
(자격증, 상훈, 실적 등)(해당자만 제출) ※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 것만 인정

## 9. 기타(유의)사항

- 가.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, **불합격자에 한해 원하는 경우 원본서류는 반환 가능합니다.**
- 라.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,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나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및 정지 등)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)
- 마.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- 바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

수자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)

자. 철원군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차.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([www.cwg.go.kr](http://www.cwg.go.kr)) “시험정보” 란에 공고합니다.

카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자치행정과 행정부서(☎ 033-450-52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예정직무 관련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

**【 예정직무 관련 문의처 】**

채용분야	담당부서	전화번호	비 고
노무사	자치행정과(서무)	033-450-5231	
법제전문관	기획감사실	033-450-5217	
평생교육	인재육성과	033-450-5867	